

의안번호	제 5 호	의결사항
의결년월일	1997. 3. . (제 회)	

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7. 2. 3 .

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1997. 3. 3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과의 쓰레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 방법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나,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차등 판매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생활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을 시청소차 수거용과 대행업체 수거용을 단일화함.(안 제16조)

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수료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은 별표4와 같다. 이경우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, 운반,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.

[별표4]를 별지와 같이 하고, [별표5]를 삭제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공급된 쓰레기 봉투는 전량 소모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.

[별표4]

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

(시 청소차, 대행업체수거용)

(단위 : 매당, 원)

구 분	5ℓ	10ℓ	20ℓ	50ℓ	100ℓ	비 고
수집·운반	63	127	254	635	1,271	
처 리 비	8	15	36	87	166	
봉투제작비	12	14	22	49	105	
공 급 액	83	156	312	771	1,542	
판매수수료	7	14	28	69	138	
판 매 액	90	170	340	840	1,680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제16조(일반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수수료의 부과 · 징수)	제16조(일반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수수료의 부과 · 징수)	제16조(일반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수수료의 부과 · 징수)
①(생략)	①(현행과 같음)	①(현행과 같음)
1.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 의 수수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봉투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4· 5의 기준에 의한다. 이 경우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, 운반,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 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 여 결정하되,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공급, 판매가격과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공급 판매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.	1.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 의 수수료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 은 별표4와 같다. 이 경우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집, 운반,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 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 정한다.	1.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 의 수수료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 은 별표4와 같다. 이 경우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집, 운반,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 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 정한다.